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월 2일,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2.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9.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박성훈)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정사업자가 입주하고, 조정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정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정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정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정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정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진흥시설이나 조정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경진흥시설¹⁾의 지정·해제 권한과 조경진흥단지²⁾의 지정·해제·조성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더불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6년 법 시행³⁾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과 같이 지정·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경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조경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1) 「조경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조경진흥시설**”이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2) 「조경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조경진흥단지**”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3) 2015.1.6. 제정, 2016.1.7. 시행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더라도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⁴⁾ 하에서 객관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지역별 특색있는 분야의 지정을 통해 조경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현행법 제18조제2호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9조의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제18조의 청문 주체에도 시·도지사를 포함하여 수정함.

4)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 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 제18조제2호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9조의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제18조의 청문 주체에도 시·도지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나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청문) <u>국토교통부장관</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8조(청문) (현행과 같음)	제18조(청문) <u>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u> ----- ----- ----- -----. 1. ~ 3. (현행과 같음)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9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나 시·도지사”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u> 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u>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u> ----- ----- ----- ----- ----- ----- ----- ----- -----.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u>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 ----- <u>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u> ----- -----.
③ <u>국토교통부장관</u> 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	③ <u>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 지사는</u> ----- ----- ----- -----.

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략)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
(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
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
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
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
지사는-----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
지사는-----

-----.

③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
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지정 해제) 제7조, 제8조에 따
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나 시·도지사는-----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

제18조(청문) <u>국토교통부장관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8조(청문) <u>국토교통부장관이나</u> <u>시·도지사는</u>----- ----- -----. 1. ~ 3. (현행과 같음)
--	---